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489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윤준병 · 서삼석 · 이학영  
조계원 · 문금주 · 임미애  
문대림 · 김의겸 · 서영석  
홍기원 · 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사심의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16조의3(경찰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 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⑦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6조의2(수사심의신청 등) ①</u><br/> <u>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u><br/> <u>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u><br/> <u>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u><br/> <u>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u><br/> <u>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u><br/> <u>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u><br/> <u>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u><br/> <u>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u><br/> <u>이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u><br/> <u>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u><br/> <u>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u><br/> <u>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u><br/> <u>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u><br/> <u>0일 이내에 해야 한다.</u></p> <p><u>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u><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br/> <u>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u><br/> <u>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u><br/> <u>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u></p> <p><u>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u><br/> <u>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u></p> |

<신 설>

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  
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  
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  
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수사  
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  
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  
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  
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16조의3(경찰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법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